



규정

산학협력과건 교원 제도에 관한 규정


문서번호	TWP-A607
제정일자	2012. 10. 29.
개정일자	2014. 03. 24.
개정번호	1
페이지	1/4

목 차

부 칙

작성부서	산학협력단	제정일자	2012. 10. 29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						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7
		제정일자	2012. 10. 29.
	산학협력과건 교원 제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전임교원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)육성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파견만 전념 하도록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거점별 학생 현장실습업체 순회지도
2. 현장실습산업체 관리 및 신규 산업체 발굴(산업체방문, 산학협동협의회조직 체결 등)
3. 학생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체 발굴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산학협력과건교수라 함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현장을 직접체험만 전념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산학협력과건 교원이라 함은 파견을 부여 받은 전임교원을 의미한다.

제3조(자격) ① 본교에서 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산학협력과건교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정년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교원은 파견 교원이 될 수 없다.
 ②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은 다시 파견 교원이 될 수 있다.

제4조(파견기간) 파견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7개월 이내로 한다.


제5조(신청절차 및 선정) ① 파견 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은 파견 개시일 1개월전 소속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03.24.>

- ② 파견 교원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- ③ 파견 교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 1. 근속기간
 2. 연구년 미참여 전임교원 또는 연구년 시행 후 3년이상 초과 교원
 3. 산업체 6개월이상 파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원
 4.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산업체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원

제6조(인원제한) ① 파견 교원의 수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)육성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한다.

② 전공 또는 학부의 파견 교원의 수는 1명 이내로 한다.<개정 2014.03.24.>

제7조(신분) 파견 교원은 파견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607	
		제정일자	2012. 10. 29.	
	산학협력과건 교원 제도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- 제8조(처우)** ① 파견 교원에 대하여는 파견기간 중 초과강의료를 제외한 보수전액을 지급한다.
 ② 파견교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내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.
 ③ 파견기간은 승진·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강의대체) 파견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전공 또는 학부의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. 다만, 교과목 성격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강사로 대신할 수 있다.<개정 2014.03.24.>

- 제10조(의무)** ① 파견 교원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출강할 수 없으며 정부 기타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.
 ② 파견 교원은 매월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파견 종료 후 즉시 복귀한다 복귀 후 7일 이내에 전체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③ 파견교원은 복귀 후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복귀 후 3년 이내에 사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교원에게는 파견 중에 지급한 활동경비 전액을 회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